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3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정을호 · 김준혁

김동아 · 양부남 · 김남근

이광희 · 박해철 · 김승원

민형배 · 박지원 · 최혁진

백승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,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,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

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0항 중 “물가상승률의 1.2배를”을 “물가상승률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“물가상승률의 1.2배를”을 “물가상승률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~ ⑨ (생 략)	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<u>1.2배를</u>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⑩ ----- ----- ----- <u>물가상승률을</u> ----- -----.
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<u>물가상승률의 1.2배를</u>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.	⑪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물가상승률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⑫ (생 략)	⑫ (현행과 같음)